

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
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김인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40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4월 3일

발 의 자 : 김인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춘례, 김기덕, 김경영,
김광수, 유정희, 송정빈,
최정순, 송아량, 이광성,
경만선, 최영주, 황규복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」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및 홍보 실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“ 「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 ” 후단에 “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를 추가하여 추후 개정 시 입법기술 상 효율성을 높임.(안 제4조)
- 나.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을 새롭게 규정함.(안 제5조의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

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「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

「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」

「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「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3(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)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지원 대상자)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「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,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4조(지원 대상자) ----- ----- 「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-.</p> <p>제5조의3(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)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